

---

# 복 지 국

---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복지과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P - 5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월 ~ 8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전 시민대상 177,235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장기화에 따라 지원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5,523,390				104,366,056	1,157,334	105,523,390
국 비		105,333,402				104,333,064	1,000,338	105,333,402
도 비		94,994				16,496	78,498	94,994
시 비		94,994				16,496	78,498	94,99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상 가구조정·이의신청·의제기부금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근거내용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2,768가구) 의제기부금 지급(고용보험기금으로 이체)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김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348	523	697	87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김포시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400	600	800	1,0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1,157,334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당초예산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98,258,440원 - 98,317,306원	= -58,866 지급액(A) 58,866 감액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02-03 기타 반환금	·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 - 지급대상 : 미신청가구(2,768가구) - 지급금액 : 1,216,200원 - 지급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기부금 이체	= 1,216,200 미신청가구 의제기부금(B) 1,216,200 편성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월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0. 12월 : 미신청자(의제기부금) 등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175,638가구 103,579,999천원 집행 ○ 부 대 비 용 : 58,162천원 집행	11월 현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04,366,056	103,638,161	-	727,89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미선	전화	2192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P - 5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42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4,688	23,590	24,304				-714	8,902	
국 비									
도 비	7,488	11,895	12,292				-397	4,407	
시 비	7,200	11,695	12,012				-317	4,49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와 관련, 지침 변경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단가를 반영하여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23,590,000원 - 24,304,000원 = -714	도비 50% 시비 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0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 현황 파악
- 2021.03~1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월별, 분기별)
- 2021.12.1.~12.31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286명 지원	
2019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400명 지원	
2020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117명 지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6,310	2,544	-	2,544	
2019년	14,668	13,056	-	1,632	
2020년	24,304	4,680	-	19,624	11.30.일까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복지8급 김승현	전화	2619
-----	-----	------------	-----	----------	----	------

# (생계급여) (P - 5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약4,0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9,235,000</b>	<b>21,653,800</b>	<b>22,865,000</b>	<b>0</b>	<b>0</b>	<b>0</b>	<b>-1,211,200</b>	<b>2,418,800</b>	
국 비	15,388,000	17,323,000	18,292,000				-969,000	1,935,000	국비80%
도 비	1,923,500	2,165,400	2,286,500				-121,100	241,900	도비10%
시 비	1,923,500	2,165,400	2,286,500				-121,100	241,900	시비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 일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근거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804,483,340원×12월) = 21,653,800,000원 - (1,905,416,670원×12월) = 22,865,000,000원 = -1,21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읍면동 생계급여 대상자 신규책정 및 변동 확인
- 매월 : 생계급여 지급(매월 20일 정기급여, 매월 말일 추가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생계급여 지급 : 3,320가구 18,479,437천원 지급	
2019년	○ 생계급여 지급 : 3,610가구 19,073,487천원 지급	
2020년	○ 생계급여 지급 : 4,074가구 19,590,385천원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8,786,910	18,479,437	-	307,473	
2019년	19,235,000	19,073,487	-	161,513	
2020년	22,865,000	19,590,385	-	3,274,61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성민	전화	2621
-----	-----	------------	-----	------------	----	------

# (해산장제급여) (P - 5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7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43,201</b>	<b>171,760</b>	<b>177,500</b>				<b>-5,740</b>	<b>28,559</b>	
국 비	114,560	137,400	142,000				-4,600	22,840	국비80%
도 비	8,593	10,310	10,650				-340	1,717	도비6%
시 비	20,048	24,050	24,850				-800	4,002	시비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전체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근거내용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것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시 70만원 및 사망 시 8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171,760,000원 - 177,500,000원	= -5,7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수시 : 해산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해산급여 : 7명 / 4,200천원 ○ 장제급여 : 139명 / 104,250천원	
2019년	○ 해산급여 : 10명 / 6,000천원 ○ 장제급여 : 176명 / 132,000천원	
2020년	○ 해산급여 : 6명 / 4,200천원 ○ 장제급여 : 194명 / 154,650천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39,440	108,450	-	30,990	
2019년	143,201	138,000	-	5,201	
2020년	177,500	158,850	-	18,65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운영	전화	2624
-----	-----	------------	-----	----------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립전) (P - 5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0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240,000	1,525,714	1,240,000				285,714	285,714	
국 비	868,000	1,068,000	868,000				200,000	200,000	
도 비									
시 비	372,000	457,714	372,000				85,714	85,7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증가(1,551명→2,000명)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인구증가 비례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제공기관 일자리 창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285,7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0,000원×1,428명×1월 = 285,71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4월, 6월, 7월 : 상·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및 개시
- 2020. 10월~12월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 : 1,278,560천원 - 내용 : 5개 분야 5개 사업 - 이용자 1,540명, 47개 제공기관 241명 제공인력 일자리 제공	
2019년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 : 1,240,000천원 - 내용 : 6개 분야 7개 사업 (신규 2개사업 개발) - 이용자 1,760명, 49개 제공기관 255명 제공인력 일자리 제공	
2020년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 : 1,409,988천원 - 내용 : 6개 분야 7개 사업 - 이용자 2,000명, 59개 제공기관 301명 제공인력 일자리 제공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	1,278,560	1,278,560	0	0	
2019	1,240,000	1,217,217	0	22,783	
2020	1,410,000	1,409,988	0	12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예산현액 차액분은 국비 미교부액 반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2631
-----	-----	------------	-----	----------	----	------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P - 58~5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3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0	800,000	0		680,000		120,000	800,000	
국 비		400,000			340,000		60,000	400,000	
도 비		266,400			226,440		39,960	266,400	
시 비		133,600			113,560		20,040	133,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4 -제28조의 5
근거내용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120,000
생활지원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 454,900원 × 263명 = 120,000	(1인가구 14일 격리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생활지원비 지원 : 763가구/2,267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641,006천원	11.30일 현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80,000	641,006	-	38,994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32
-----	-----	------------	-----	----------	----	------

#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 사업) (P - 5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3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0	23,000	0	1,105,000			-1,082,000	23,000	
국 비									
도 비		23,000		1,105,000			-1,082,000	23,0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당초 임사·일용직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되었으나 1차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되어 변경 내시 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필요
- 경찰의 기존 복지사각 발굴 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생계형 범죄 훈방자 및 범죄 피해 가구
  -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생계형 범죄 훈방자, 생계형 범죄 기소유예자
  - 경찰이 신문(訊問) 등 치안 활동으로 알게된 생계 위기 가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1,082,000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비 지원 (552,500원×2,000가구) = 1,105,000,000원 -(766,660원× 30가구) = 23,000,000원 = -1,08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2020.12월 : 지원대상 발굴 (김포경찰서 연계)
- 2020.12월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32
-----	-----	------------	-----	------------	----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P - 5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저소득층 위기가구 2,692가구(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2,167,806					2,167,806	2,167,806	
국 비		2,167,806					2,167,806	2,167,806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정부 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지원조건 : 소득감소사유,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지원수준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2,167,806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비 = 8,360 ·PC 및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대료 = 4,200 ·서식 인쇄비 = 1,62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 2,153,626,000원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2,692가구 - 지급방법 : 1회 현금 계좌입금 = 2,153,62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9.28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구성
- 2020.10.05 : 사업지침 통보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10.06 : 추진계획 수립
- 2020.10.12.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시작
- 2020.10.17.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 2020.10.19. : 방문(읍면동) 접수 시작
- 2020.11.~12.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 / 적합·부적합 통보 / 이의신청
- 2020.12. : 최종 지급 및 지급액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긴급생계지원TF팀장 이영권	담당자	행정7급 이혜진	전화	4363
-----	-----	----------------	-----	----------	----	------

#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P - 5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519명(사회복지 명예공무원 122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9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이끌어 민관협력 강화기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0	18,615	0				18,615	18,615	
국 비									
도 비		5,580					5,580	5,580	
시 비		13,035					13,035	13,03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명예공무원에 대한 참석수당, 활동 물품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민관협력)제1항,제3항
근거내용	제14조(민관협력)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위기 이웃 발굴 지원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협조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에 회의 참석수당 지원
  - 사회복지명예 공무원- 무보수명예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명예공무원에 대하여 활동 홍보 물품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18,615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사회복지명예공무원 활동 홍보물품 구매 1,221명×12,000원	= 14,595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원 134명×30,000원	= 4,02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0.12 : 활동 홍보물품 구매 및 회의참석 수당 지급
- 2020.12 : 사업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승현 사회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19 2632
-----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6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정규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급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0,800	8,400	10,800				-2,400	-2,400	
국 비									
도 비	3,240	2,520	3,240				-720	-720	
시 비	7,560	5,880	7,560				-1,680	-1,6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7명 → 5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6호
근거내용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정규직)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급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0,000원 - 10,800,000원	= -2,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9월 : 지역자활센터(특수근무수당) 변경내시
- 매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명칭변경) - 사업량 : 6명 - 지원액 월 150천원 : 5년이상(3명) 월 100천원 : 5년미만(3명)	
2019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사업량 : 4명 - 지원액 월 150천원 : 5년이상(1명) 월 100천원 : 5년미만(3명)	
2020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사업량 : 4명 - 지원액 월 150천원 : 5년이상(3명) 월 100천원 : 5년미만(1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7,050	6,450	0	600	
2019년	10,800	5,200	0	5,600	
2020년	10,800	5,350	0	5,45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화연	전화	2622
-----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P - 6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국민기초, 차상위)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질환자 및 한부모 가정 등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지원으로 원활한 일상생활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69,000	114,950	86,429				28,521	45,950	
국 비	48,300	80,465	60,500				19,965	32,165	70%
도 비									
시 비	20,700	34,485	25,929				8,556	13,785	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21명 → 2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54,780원×27명×12월) = 114,950,000원 - (342,970원×21명×12월) = 86,429,000원 = 28,52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매월 5일, 15일, 25일 : 서비스 비용 정기 지급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 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20명	
2019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23명	
2020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23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4,351	54,351		-	
2019년	69,000	69,000		-	
2020년	86,429	65,000		21,429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운영	전화	2624
-----	-----	------------	-----	----------	----	------

# (희망키움통장 I) (P - 6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47,500	37,890	51,490				-13,600	-9,610	
국 비	38,000	30,312	41,192				-10,880	-7,688	80%
도 비	2,850	2,273	3,089				-816	-577	6%
시 비	6,650	5,305	7,209				-1,904	-1,345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16명 → 12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에 대하여 소득에 비례하여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646천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희망키움통장 I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 I (263,120원×12명×12월) = 37,890,000원 - (268,180원×16명×12월) = 51,490,000원 = -13,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0. 2. ~ 11.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4명	
2019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6명	
2020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5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82,000	82,000			
2019년	47,500	47,500			
2020년	51,490	37,890	-	13,6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윤영	전화	2624
-----	-----	------------	-----	----------	----	------

# (희망키움통장 II) (P - 6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6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356,200</b>	<b>268,800</b>	<b>381,692</b>	<b>-17,829</b>			<b>-95,063</b>	<b>-87,400</b>	
국 비	284,960	215,040	305,354	-14,263			-76,051	-69,920	80%
도 비	21,372	16,128	22,902	-1,070			-5,704	-5,244	6%
시 비	49,868	37,632	53,436	-2,496			-13,308	-12,236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351명 → 264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만원)에 대하여 1:1 비율로 매칭한 근로소득 장려금(10만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희망키움통장 II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 II (84,850원×264명×12월) = 268,800,000원 -(86,390원×351명×12월) = 363,863,000원 = -95,06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월, 5월, 8월, 10월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23일 ~ 31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25명	※2019년 신규사업
2020년	○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87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6,200	356,200	-	-	※2019년 신규사업
2020년	363,863	268,800	-	95,063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운영	전화	2624
-----	-----	------------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P - 6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70,758</b>	<b>41,200</b>	<b>95,275</b>			<b>-22,207</b>	<b>-31,868</b>	<b>-29,558</b>	
국 비	56,606	32,960	76,220			-17,765	-25,495	-23,646	80%
도 비	4,246	2,472	5,716			-1,332	-1,912	-1,774	6%
시 비	9,906	5,768	13,339			-3,110	-4,461	-4,138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26명 → 16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 15~39세)에게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23천원)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희망키움통장 (214,580원×16명×12월) = 41,200,000원 - (234,190원×26명×12월) = 73,068,000원 = -31,86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0. 2. ~ 11.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6명	
2019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2명	
2020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9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0,070	50,070		-	
2019년	70,758	70,758		-	
2020년	73,068	41,200		31,868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운영	전화	2624
-----	-----	------------	-----	----------	----	------

# (청년저축계좌) (P - 6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지원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0	66,000	76,999	-44,911		42,053	-8,141	66,000	
국 비	0	52,800	61,600	-35,929		33,642	-6,513	52,800	
도 비	0	3,960	4,620	-2,695		2,523	-488	3,960	
시 비	0	9,240	10,779	-6,287		5,888	-1,140	9,2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43명 → 4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지원□	보조지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매칭(1:3)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청년저축계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저축계좌 (137,500원×40명×12월) = 66,000,000원 -(143,680원×43명×12월) = 74,141,000원 = -8,14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년 신규사업
- 2020. 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0. 4월, 7월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약 (예약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1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74,141	62,279		11,862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윤영	전화	2624
-----	-----	------------	-----	----------	----	------

# (자활장려금) (P - 61~6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73,704	20,670	86,837	-66,337	0	-3,500	3,670	-53,034	
국 비	58,963	16,900	69,470	-53,070		-2,800	3,300	-42,063	국비80%
도 비	4,422	1,131	5,210	-3,980		-210	111	-3,291	도비6%
시 비	10,319	2,639	12,157	-9,287		-490	259	-7,680	시비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참여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계획6명⇒11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내용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  
(※ 타시군 전입금으로 보조비율 상이 국90%, 도3%, 시7%)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자활장려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활장려금 (1,722,500원×12월) = 20,670,000원 - (1,416,670원×12월) = 17,000,000원 = 3,670	자활참여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자활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자활장려금 지원 - 연인원 기준 19명 - 지원액 15,201천원	
2020년	○ 자활장려금 지급 - 연인원 기준 22명 - 지원액 16,399천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3,704	15,201	-	58,503	
2020년	17,000	16,399		601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성민	전화	2621
-----	-----	------------	-----	------------	----	------

# (일반회계 전출금) (P - 169)

##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재정관리 투명성 제고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535,474</b>					<b>535,474</b>		
국 비									
도 비									
시 비		535,474					535,47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제 1741호
근거내용	<p>○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p> <p>○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용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여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p> <p>가.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폐지</p> <p>나. 경과조치 : 특별회계 운용자금 일반회계로 귀속(부칙2조)</p> <p>&lt;부칙&gt;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금 상환등 관리·운용 되어온 채권·채무 등은 일반회계가 승계한다.</p> <p>②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의 잔액 및 용자금 회수수입등 운용자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 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일반회계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 일반회계 전출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 3,294,000원 -생활안정자금 회수 이자수입 : 118,000원 -지난연도 수입 : 7,000,000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 10,000,000원 -순세계 잉여금 : 515,062,000원  = 535,47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9.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폐지
- 일반회계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안정용자금 채권 관리 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최운영	전화	2624
-----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본인부담금 지원))(P - 173)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7,0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해 본인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향상 도모

○ 위 치 : 김포시 관내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412,200	544,400	404,100				140,300	132,200	
국 비	329,760	435,520	323,280				112,240	105,760	
도 비	57,708	76,216	56,574				19,642	18,508	
시 비	24,732	32,664	24,246				8,418	7,93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증가(6,542 → 7,081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2, 13조
근거내용	제12조(요양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의료급여사업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76,882원×7,081명) = 544,400,000원 - (61,770원×6,542명) = 404,100,000원 = 140,300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월 : 2020년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
- 분기별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정산 지급
- 반기별 :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 수 시 :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요양비 지원 : 543건, 99,653천원 · 보조기기 지원 : 160건, 158,455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939건, 92,180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351건, 12,169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940건, 12,848천원	
2019년	· 요양비 지원 : 494건, 108,557천원 · 보조기기 지원 : 90건, 71,688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863건, 94,566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227건, 13,169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546건, 26,108천원	
2020년	· 요양비 지원 : 598건, 131,411천원 · 보조기기 지원 : 129건, 130,020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712건, 86,737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625건, 10,373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272건, 11,094천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85,000	375,305		9,695	
2019년	412,200	412,197		3	
2020년	404,100	369,635		34,46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화연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P - 17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7,0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2,280,570	2,368,362	2,338,350				30,012	87,792	
국 비									
도 비									
시 비	2,280,570	2,368,362	2,338,350				30,012	87,79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증가(6,542 → 7,081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27조제1항
근거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단위 : 천원)

예산액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비고
39,472,700	31,578,160	5,526,178	2,368,362	

- 국도비는 경기도에서 집행

○ 사업내용

-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급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총당 등을 위하여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30,0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334,467원×7,081명) = 2,368,362,000원 - (357,437원×6,542명 = 2,338,350,000원 = 30,01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월 : 2020년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
- 하반기 진료비 예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3회)	
2019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4회)	
2020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4회)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818,840	1,818,840		-	
2019년	2,280,570	2,280,570		-	
2020년	2,338,350	2,338,350		-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화연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P - 173)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4,572	4,536	4,800				-264	-36	
국 비									
도 비									
시 비	4,572	4,536	4,800				-264	-3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전체 시군사업비 조정(의료급여 위탁수수료를 조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근거내용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등 의료급여 관련업무의 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 부담
-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단위 : 천원)

예산액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비고
75,600	60,480	10,584	4,536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비 지급관련 위탁수수료 4,536,000원 - 4,800,000원 = -26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월 : 2020년 의료급여경상보조 변경내시
- 하반기 진료비 예약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정산(3회)	
2019년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정산(4회)	
2020년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정산(4회)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476	4,476		0	
2019년	4,572	4,572		0	
2020년	4,800	4,536		264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화연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P - 173~174)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관외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절감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26,188</b>	<b>126,226</b>	<b>127,296</b>				<b>-1,070</b>	<b>38</b>	
국 비	88,048	85,307	88,320				-3,013	-2,741	
도 비	15,408	14,929	15,456				-527	-479	
시 비	22,732	25,990	23,520				2,470	3,25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비지원 축소 및 공무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호봉제 적용으로 자체재원 증가분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5조 제2항
근거내용	제5조의2(사례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집중관리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무기계약직 3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1,070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체부담분) 225,000원×3월×4월 = 2,700	시비 10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61,944원×3명×12월) = 99,430,000원 -(2,866,666원×3명×12월) = 103,200,000원 = -3,770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9월 : 공무원 임금협약 체결
- 2020. 11월 : 2020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
- 매월 급여, 수당, 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2018년 4월 무기계약근로자2명 추가 채용)	
2019년	·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0년	·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20,626	112,485		8,141	
2019년	126,188	116,886		9,302	
2020년	127,296	99,481		27,81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화연	전화	2622
-----	-----	------------	-----	------------	----	------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아동청년과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P - 6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청년정책 네트워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과 시정현안 과제를 발굴 제안함으로써 시정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0,300	6,350	16,350				-10,000	-3,950	
국 비									
도 비									
시 비	10,300	6,350	16,350				-10,000	-3,9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로 역량강화 워크숍 및 분과활동 불가에 따른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12조
근거내용	<p><b>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b>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p> <p><b>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b>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임불가에 따라 불용예산 삭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계	=	-10,000
청년정책 네트워크	201-03 행사운영비	· 청년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 -1,600
	301-12 기타보상금	·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비	= -8,4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2. : 공개모집을 통한 구성완료(5개분과 31명)
- 2019. 1. ~ 12. : 월별 분과활동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9. 11. ~ 12. :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및 성과보고회 참여
- 2020. 1. ~ : 분과별 자체활동 및 임원회의 개최
- 2020. 9. ~ : 청년정책네트워크 자체사업 「청춘박스」 추진
- 2020. 12. : 청년정책 성과보고회 참여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 2.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5개분과/31명) - 2019. 1. ~ 12. 월별 분과활동 추진 및 워크숍, 청년학교 개최 - 2019. 12. 청년정책 성과보고회 참여	
2020년	- 2020. 2. 청년정책네트워크 재구성(5개분과/31명) - 2020. 1. ~ 분과활동 추진 - 2020. 9. ~ 자체사업 「청춘박스」 추진	11.30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300	2,200		8,100	
2020년	16,350	2,466		13,884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9급 김윤선	전화	2162
-----	-------	------------	-----	----------	----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 (P - 63~6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 사업규모 : 관내 강소기업 및 사회경제기업 36개소 및 청년 56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내 강소기업과 미취업청년을 취업 연계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정착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926,200	883,590	1,022,219	-138,629			0	-42,610	
국 비	570,500	540,581	626,387	-85,806			0	-29,919	
도 비	106,710	102,903	118,750	-15,847			0	-3,807	
시 비	248,990	240,106	277,082	-36,976			0	-8,88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통계목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타보상금)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근거내용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3개월 경과된 청년에게 분기별마다 250만원씩 1년간 총 1,000만원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883,59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김포청년 채용디딤돌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930,090원 × 1명 × 1월 =	1,931
	201-03 행사운영비	· 네트워크 운영 : 7,500,000 × 2회 ·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 : 350,000원 × 25명 =	23,750
	301-12 기타보상금	· 2,500,000원 × 4인 =	1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1,600,000원 × 56명 × 9월 =	847,909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2월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
- 2021. 1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2021. 2월 ~ 3월 : 사업홍보 및 신규 참여기업청년 40인 모집
- 2021. 4월 : 신규참여 청년 자체직무교육시행
- 2021. 1월 ~ 12월 : 근로활동 및 사업비지원, 반기별 네트워크(워크숍)지원, 3년차 근속 인센티브 제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6. 26. :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li> <li>○ 2018. 7월 : 성립 전 예산 편성, 세부계획수립</li> <li>○ 2018. 7~8월 : 사업 홍보,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 취업매칭(20명)</li> <li>○ 2018. 9월~ : 전담매니저 채용 및 참여청년 고용유지를 위한 컨설팅 지원</li> <li>○ 2018. 11월 : 참여청년 추가모집(10명)</li> <li>○ 2018. 8~12월 : 근로청년 인건비 지원</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1월~3월 : 전담매니저 채용 및 사업 홍보, 참여기업 모집</li> <li>○ 2019. 4월 : 참여자 모집 및 취업매칭, 상반기 워크숍</li> <li>○ 2019. 5월 ~ 6월 : 상반기 참여기업 및 참여자 추가모집공고</li> <li>○ 2019. 7월 : 경기도일자리재단 직무교육</li> <li>○ 2019. 8월 ~ 10월 : 참여대상자 인건비 지원</li> <li>○ 2019. 11월 : 하반기 워크숍</li> <li>○ 2019. 12월 : 사업결산</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월 ~ 12월 : 참여청년 근로활동 및 사업비 지원</li> <li>○ 2020. 6월 ~ 7월 : 온라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시행</li> <li>○ 2020. 11월 : 청년 간 네트워크(워크숍) 시행</li> <li>○ 2020. 12월 :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 시행</li> </ul>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70,000	243,136	20,800	6,063	자부담포함
2019년	1,161,800	1,156,491	0	5,309	자부담포함
2020년	883,590	720,407	0	163,183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8급 김예진	전화	2158
-----	-------	------------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6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걸포로 76(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규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청소년상담 서비스 질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8,400	8,450	9,000	0	0	-1,250	700	50	
국 비									
도 비	8400	8,450	9,000			-1,250	700	5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7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처우개선비(50,000원/명)×14명	= 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2명 지원	
2019년	-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5명 지원	
2020년	-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4명 지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7,800	6,650	-	1,150	
2019년	8,400	8,000	-	400	
2020년	7,750	7,750	-	-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P - 6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
- 사업규모 : 1개소, 14,992.9㎡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도시 내 청소년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소년 권리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30,000</b>	<b>200,000</b>				<b>30,000</b>	<b>230,000</b>	
국 비									
도 비									
시 비		230,000	200,000				30,000	23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 약정 체결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 확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2021년 예정	2019.11월	2018.1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소년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필요성 증대
- 중봉청소년수련관 기능포화에 따른 역할분담 필요
-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권의 청소년 공간 마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계 = 30,000	
신도시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207-01 연구개발비	·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 30,000	120,000천원 →150,000천원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673,000		230,000	200,000	0	0	0	30,000	66,443,000
공 정 별	설계비	1,299,000	0						12,99,000
	보상비	31,300,000	0						31,300,000
	공사비	26,027,000	0						26,027,000
	감리비	1,857,000	0						1,857,000
	부대비	60,000	0						60,000
	용역비	230,000		230,000	200,000			30,000	
	기타	162,000		0					162,000
	예비비	5,738,000		0					5,738,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4.08. : 건립계획 수립
- 18.01. : 공유재산 심의 의결
- 18.11. : 변경계획 수립(중기, 장기적 건립추진)
- 20.02. ~ 08.(6개월) : 타당성 조사 사전 용역
- 20.10. ~ 21.05.(7개월) :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심사
- 21.08. ~ 21.12.(3개월)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 22.01. : 부지매입
- 22.02. ~ 22.06.(5개월) : 실시설계 공모
- 22.07. ~ 24.02. (1년 8개월) : 실시설계 용역
- 24.05. ~ 26.05. (2년)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자료작성 용역 완료(2020.08) -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 체결(2020.10)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00,000	69,225	-	130,77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 1 이상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 (아동수당 지급) (P - 64~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4,74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37,110,503</b>	<b>41,281,200</b>	<b>38,833,501</b>	<b>211,499</b>			<b>2,236,200</b>	<b>4,170,697</b>	
국 비	25,977,353	28,896,840	27,183,450	148,050			1,565,340	2,919,487	
도 비	3,339,945	3,715,308	3,495,015	19,035			201,258	375,363	
시 비	7,793,205	8,669,052	8,155,036	44,414			469,602	875,84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20141(2020. 11. 12.)호에 따른 증액 및 지급 대상자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3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수당의 지급을 통해 가정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00,000원 × 22,362명 × 1개월 = 2,236,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 ~ 2020. 12.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27,688명 지급	
2019년	33,553명 지급	
2020년	34,478명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1,165,250	11,036,950	-	128,300	-
2019년	37,110,503	36,963,500	-	147,003	-
2020년	39,045,000	33,933,700	-	5,111,3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원태	전화	5593
-----	-------	----------	-----	------------	----	------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P - 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9. ~ 2020.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미취학 아동 33,67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양육·돌봄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	6,735,200	-	-	-	-	6,735,200	6,735,200	
국 비	-	6,735,200	-	-	-	-	6,735,200	6,735,200	
도 비	-	-	-	-	-	-	-	-	
시 비	-	-	-	-	-	-	-	-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19에 따른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성립전 예산편성 및 변경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근거내용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교 제외)에 대해 1인당 20만원(현금)을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6,735,200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200,000원 × 33,676명 × 1회 = 6,735,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9.25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성립전 예산편성(6,711,200천원)
- 2020.09. ~ 2020.11. :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
- 2020.12. :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33,531명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711,200	6,706,200	0	5,0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복지8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P - 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5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264,600	277,649	262,800	-	-	13,350	1,499	13,649	
국 비	185,220	194,355	183,960	-	-	9,345	1,050	9,135	
도 비	11,907	12,494	11,826	-	-	601	67	587	
시 비	67,473	70,800	67,014	-	-	3,404	382	3,32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18795(2020.10.22.)호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증가(10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17세 미만의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1,499
입양아동양육 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 150,000원 × 10명 × 1개월 ≒	1,49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1. ~ 2020. 12. : 매월 20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입양아동 140명 지급	
2019년	입양아동 142명 지급	
2020년	입양아동 154명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57,400	255,000	-	2,400	
2019년	264,600	258,900	-	5,700	
2020년	276,150	254,100	-	22,050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복지8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P - 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매칭대상 59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초기비용 저축 및 사회진출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46,388	289,127	203,413	-	-	-	85,714	142,739	
국 비	102,470	202,389	142,389	-	-	-	60,000	99,919	
도 비	6,588	13,011	9,154	-	-	-	3,857	6,423	
시 비	37,330	73,727	51,870	-	-	-	21,857	36,39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15768(2020.9.11.)호 변경내사에 의한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2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85,714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정부지원금 50,000원 × 144명 × 12회 =	85,71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매월 초 아동의 전달 적립액에 따라 1:1 정부매칭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384명 매칭	
2019년	384명 매칭	
2020년	455명 매칭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24,320	113,894			
2019년	146,388	141,970		4,418	
2020년	203,413	176,959		26,454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복지8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P - 6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35,410</b>	<b>44,137</b>	<b>38,720</b>				<b>5,417</b>	<b>8,727</b>	
국 비	17,705	22,069	19,360				2,709	4,364	
도 비	2,656	3,310	2,904				406	654	
시 비	15,049	18,758	16,456				2,302	3,709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2019년 17개소 -> 2020년 19개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실시 및 감염병 관리 등 센터 운영에 따른 격려 및 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
- ※ 20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균등 지급 실시 : 센터별 2,323천원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5157(20.10.28.)호에 의거 균등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5,417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 2,323,000원×2개소×1회 =	5,41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2월 중 : 시설별 균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16개소 지급	
2019년	17개소 지급	
2020년	2020.12월 집행 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6,280	36,277	-	3	
2019년	35,410	35,409	-	1	
2020년	38,720	-	-	-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3,1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 270,000원*5대 = 1,350 · 태블릿PC 350,000원*5대 = 1,750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59,000	340,500		18,500	
2019년	355,000	329,723		25,277	
2020년	380,438	253,326		127,112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드림스타트팀장 이영임	담당자	행정8급 장재혁	전화	5600
-----	-------	-------------	-----	----------	----	------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노인장애인과**





# (기초연금 지급) (P - 6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약 35,2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85,650,767</b>	<b>100,244,000</b>	<b>96,154,597</b>				<b>4,089,403</b>	<b>14,593,233</b>	
국 비	59,955,537	70,170,800	67,308,218				2,862,582	10,215,263	
도 비	5,139,046	6,014,640	5,769,276				245,364	875,594	
시 비	20,556,184	24,058,560	23,077,103				981,457	3,502,37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인구 증가 및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노인인구 진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근거내용	제4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2항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으로 생계 지원
- 지급액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16,500명(부족분) - 단독가구 25,476원 ~ 300,000원 - 부부가구 40,760원 ~ 480,000원	= 4,089,40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 : 부족한 사업비 추경 반영
- 2020.12. :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정산, 2021년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65,363,113천원 지급(28,512명)	
2019년	85,210,621천원 지급(31,096명)	
2020년	90,958,769천원 지급(34,757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65,427,422	65,363,113		64,309	
2019년	85,650,767	85,210,621		440,146	
2020년	96,154,597	90,958,769		5,195,828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이준희	전화	2205
-----	--------	------------	-----	----------	----	------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P - 6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후생복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319,600</b>	<b>359,550</b>	<b>326,400</b>			<b>30,600</b>	<b>2,550</b>	<b>39,950</b>	
국 비									
도 비									
시 비	319,600	359,550	326,400			30,600	2,550	39,95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 3회 추경대비 2,550천원 증액필요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대상자 1,750명 → 1,900명으로 150명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
근거내용	제7호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이발 및 목욕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7,000원*150명 = 2,5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12월 20일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총 지급가구 11,294가구, 195,007천원 지원	
2019년	총 지급가구 16,294가구, 305,932천원 지원	
2020년	총 지급가구 18,761가구, 326,281천원 지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34,600	195,007		39,593	
2019년	319,600	305,932		13,668	
2020년	357,000	326,281		30,719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복지8급 차효정	전화	2206
-----	--------	------------	-----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P - 6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1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5,230,097	7,348,416	7,289,610	48,390	354,000	-	-343,584	2,118,319	
국 비	2,615,048	3,851,208	3,644,805	24,195	354,000	-	-171,792	1,236,160	
도 비	392,258	524,574	546,721	3,629		-	-25,776	132,316	
시 비	2,222,791	2,972,634	3,098,084	20,566		-	-146,016	749,843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용 예산액을 코로나19 관련 재원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비 일부 감액 (도 노인복지과-22105(2020.10.22.)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2019.10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불안감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수행기관 4개소 노인일자리 사업지원금 감액 = -343,58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제4회 추경 감액 및 사업 결과보고·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실버카페 외 33개 사업에 3,620,435천원 지원, 1,498명 참여	
2019년	· 아동학습지도봉사 외 38개 사업에 5,137,222천원 지원, 1,935명 참여	
2020년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9개 사업에 6,977,723천원 지원, 2,219명 참여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655,710	3,620,435		35,275	
2019년	5,230,097	5,137,222		92,875	
2020년	7,692,000	6,977,723		714,277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복지8급 차효정	전화	2206
-----	--------	------------	-----	----------	----	------

# (생계급여(노인시설)) (P - 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1개소(2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부식비 구입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560,000</b>	<b>664,000</b>	<b>640,000</b>				<b>24,000</b>	<b>104,000</b>	
국 비	448,000	531,200	512,000				19,200	83,200	
도 비	56,000	66,400	64,000				2,400	10,400	
시 비	56,000	66,400	64,000				2,400	10,4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지급대상자 증가(203명→210명으로 7명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근거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입소 추가비용(급식비 등) 발생분의 감면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입소시설에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생계급여 [노인시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부식, 피복비 : 285,700원*7명*12월 = 24,000	

□ 사업 추진계획

- 2020.01~12. : 사업비 집행(매월), 사업비 정산(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1~12월 총집행액 : 494,257천원	
2019년	· 1~12월 총집행액 : 594,801천원	
2020년	· 1~11월 총집행액 : 605,375천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00,000	494,257	0	5,743	
2019년	600,000	594,802	0	5,198	
2020년	640,000	605,375	0	34,62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담당자	복지7급 전에스더	전화	2425
-----	--------	------------	-----	-----------	----	------

# (노인일자리 지역화폐지급) (P - 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6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위축된 소비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공익형 외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0			166,164		-166,164		
국 비									
도 비		0			166,164		-166,164		
시 비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극복 지원시책이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중복적 성격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역화폐 지급(공익형 외)’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당 사업예산을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0.9.18.)에 따라 전액 삭감 (도 노인복지과 19387(2020.9.22.)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b>계</b>	<b>-166,164</b>
		·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역화폐 지급 60,000원*681명*4월	-163,440
		· 부대경비 등 1,000원*681명*4월	= -2,724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2. : 제4회 추경 감액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복지8급 차효정	전화	2206
-----	--------	------------	-----	----------	----	------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P - 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를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1,715					11,715	11,715	
국 비		11,715					11,715	11,715	
도 비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5의2호
근거내용	제67조(국고 부담 경비)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위해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1,715,000원 * 1명 = 11,71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12 : 코로나19 사망자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담당자	복지9급 김주현	전화	2630
-----	--------	------------	-----	----------	----	------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도비)) (P - 70~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6,000	0				6,000	-6,000	-6,000	
국 비									
도 비	6,000	0				6,000	-6,000	-6,0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진출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 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도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6,000,000원 * 1명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2. : 사업집행
- 2020.3.3. : 경기도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2020.11.~12. : 2020년 실적보고 및 2021년 예산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없음	
2019년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1명	
2020년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없음(3차 추경 예산 반영 후 대상자 전출)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0	0		0	
2019년	6,000	3,655		2,345	
2020년	0	0		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장근모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P - 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1,96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수당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5,270,767</b>	<b>5,837,837</b>	<b>5,830,137</b>			<b>23,442</b>	<b>-15,742</b>	<b>567,070</b>	
국 비	3,689,537	4,086,486	4,081,096			16,409	-11,019	396,949	
도 비	316,246	350,270	349,808			1,407	-945	34,024	
시 비	1,264,984	1,401,081	1,399,233			5,626	-3,778	136,09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사업규모 1,968명→1,963명으로 5명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3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장애인연금 신청자 지속 확대
- 기본급여 : 254,760원 ~ 300,000원 / 부가급여 : 20,000원 ~ 38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262,366원*5명*12월 = 15,74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0.06.~12.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누적인원 : 21,519명 월 1,773명 1월 : 1,767명 2월 : 1,763명 3월 : 1,749명 4월 : 1,771명 5월 : 1,787명 6월 : 1,795명 7월 : 1,809명 8월 : 1,878명 9월 : 1,823명 10월 : 1,828명 11월 : 1,866명 12월 : 1,762명	
2019년	누적인원 : 22,224명 월 1,852명 1월 : 1,828명 2월 : 1,813명 3월 : 1,825명 4월 : 1,842명 5월 : 1,845명 6월 : 1,853명 7월 : 1,865명 8월 : 1,871명 9월 : 1,878명 10월 : 1,870명 11월 : 1,866명 12월 : 1,868명	
2020년	누적인원 : 21,307명 월 : 1,937명 1월 : 1,873명 2월 : 1,893명 3월 : 1,903명 4월 : 1,939명 5월 : 1,950명 6월 : 1,940명 7월 : 1,948명 8월 : 1,949명 9월 : 1,952명 10월 : 1,966명 11월 : 1,972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328,282	4,325,893		2,388,860	
2019년	5,270,767	5,259,396		11,371	
2020년	5,853,579	5,304,209		549,37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장애수당(기초) 지급) (P - 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1,13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7,560	509,003	458,554			35,466	14,983	21,443
국 비	341,292	356,302	320,988			24,596	10,718	15,010
도 비	21,938	22,905	20,635			1,581	689	967
시 비	124,330	129,796	116,931			9,289	3,576	5,46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예산 부족으로 증액 요청(1,104명→1,138명으로 34명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수당(20천원~40천원)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수당 (기초)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36,723원*34명*12월 = 14,98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0.06~12.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누적인원 : 11,045명, 월 920명 1월 : 914명 2월 : 912명 3월 : 911명 4월 : 915명 5월 : 918명 6월 : 920명 7월 : 919명 8월 : 917명 9월 : 916명 10월 : 915명 11월 : 956명 12월 : 932명	
2019년	누적인원 : 12,202명, 월 : 1,017명 1월 : 974명 2월 : 984명 3월 : 993명 4월 : 1,010명 5월 : 1,018명 6월 : 1,025명 7월 : 1,035명 8월 : 1,036명 9월 : 1,021명 10월 : 1,028명 11월 : 1,037명 12월 : 1,041명	
2020년	누적인원 : 11,677명, 월 : 1,061명 1월 : 1,038명 2월 : 1,036명 3월 : 1,042명 4월 : 1,050명 5월 : 1,066명 6월 : 1,063명 7월 : 1,059 8월 ; 1,071명 9월 : 1,076명 10월 : 1,089명 11월 : 1,087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57,556	457,511		44,700	
2019년	487,560	487,552		7,230	
2020년	494,020	464,356		29,664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P - 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78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차상위등) 경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437,303</b>	<b>468,208</b>	<b>417,010</b>			<b>37,544</b>	<b>13,654</b>	<b>30,905</b>	
국 비	306,112	327,746	291,907			26,281	9,558	21,634	
도 비	19,679	21,069	18,765			1,690	614	1,390	
시 비	111,512	119,393	106,338			9,573	3,482	7,88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예산 부족으로 증액 요청(767명→789명으로 22명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기초/시설/차상위)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
- 차상위계층 : 40천원 / 중증장애아동 : 70천원 ~ 200천원 / 경증장애아동 : 20천원 ~ 1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수당 (차상위등)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1,719원*22명*12월 = 13,65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0.06.~12.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누적인원 : 7,506명, 월 625명 1월 : 613명 2월 : 609명 3월 : 620명 4월 : 634명 5월 : 619명 6월 : 629명 7월 : 632명 8월 : 634명 9월 : 638명 10월 : 650명 11월 : 612명 12월 : 616명	
2019년	누적인원 : 8,437명, 월 : 703명 1월 : 613명 2월 : 622명 3월 : 623명 4월 : 627명 5월 : 646명 6월 : 656명 7월 : 662명 8월 : 664명 9월 : 671명 10월 : 671명 11월 : 656명 12월 : 663명	
2020년	누적인원 : 7,842명, 월 : 712명 1월 : 676명 2월 : 676명 3월 : 685명 4월 : 681명 5월 : 698명 6월 : 714명 7월 : 722명 8월 : 735명 9월 : 739명 10월 : 755명 11월 : 758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10,428	407,400		3,028	
2019년	437,303	434,500		2,803	
2020년	454,554	415,870		38,684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도비 장애수당 지급) (P - 71~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66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도 자체 수당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82,690</b>	<b>316,800</b>	<b>376,800</b>			<b>-30,000</b>	<b>-30,000</b>	<b>34,110</b>	
국 비									
도 비	56,538	63,360	75,360			-6,000	-6,000	6,822	
시 비	226,152	253,440	301,440			-24,000	-24,000	27,28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내 시·군 조정으로 예산 감액(723명→660명으로 63명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40천원)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도비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40,000원*63명*12월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0.06.~12.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누적인원 : 5,781명, 월 481명 1월 : 486명 2월 : 473명 3월 : 475명 4월 : 481명 5월 : 479명 6월 : 477명 7월 : 476명 8월 : 482명 9월 : 484명 10월 : 487명 11월 : 492명 12월 : 489명	
2019년	누적인원 : 6,465명, 월 : 538명 1월 : 490명 2월 : 489명 3월 : 523명 4월 562명 5월 : 567명 6월 : 578명 7월 : 581명 8월 : 584명 9월 : 599명 10월 : 592명 11월 : 315명 12월 : 585명	
2020년	누적인원 : 6,988, 월 : 635명 1월 : 595명 2월 : 593명 3월 : 592명 4월 : 598명 5월 : 598명 6월 : 598명 7월 : 603명 8월 : 619명 9월 : 628명 10월 : 632명 11월 : 635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35,250	235,250		0	
2019년	282,690	279,080		3,610	
2020년	346,800	270,400		76,400(추정)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P - 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장애로 인해 자녀에 대해 적극적 학습지원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4,980</b>	<b>3,684</b>	<b>5,000</b>	<b>-2,916</b>			<b>1,600</b>	<b>-1,296</b>	
국 비	3,486	2,579	3,500	-2,041			1,120	-907	
도 비	224	166	225	-131			72	-58	
시 비	1,270	939	1,275	-744			408	-33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예산 부족으로 증액 요청(1명→2명으로 1명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년 상반기 언어발달지원 대상자(1명) 추가 되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22만원 ~ 16만원 차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180,000원 * 1명 * 9월 = 1,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비 예탁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2020.01.~02. : 상반기 소득재조사
- 2020.06.~10. : 제공기관 점검 및 하반기 소득재조사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연2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2명 (단가 40,000원)	
2019년	·연3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3명 (단가 40,000원)	
2020년	·연2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4,000원) 새론감통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3,000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177	2,177		0	
2019년	4,980	4,461		519	
2020년	2,084	2,084		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P - 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의 가족 기능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5,360	10,000	15,360	-1,920		0	-3,440	-5,360	
국 비	10,752	7,000	10,752	-1,344			-2,408	-3,752	
도 비	691	450	691	-86			-155	-241	
시 비	3,917	2,550	3,917	-490			-877	-1,36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내 시·군 간 예산조정에 의한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필요
- 대상자에게 1년간 월 16만원의 바우처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160,000원 * 3명 * 7월 = 3,4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사업비 예약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2020.06.~10. : 제공기관 점검
- 2021.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연 5명 지원	
2019년	-연 8명 지원	
2020년	-연 5명 지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429	2,860		569	
2019년	15,360	11,520		3,840	
2020년	13,440	7,920		5,52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정진희	전화	2213
-----	--------	-------------	-----	----------	----	------

# (생계급여(장애인시설)) (P - 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 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코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기초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330,000	306,000	330,000				-24,000	-24,000	
국 비	264,000	244,800	264,000				-19,200	-19,200	
도 비	33,000	30,600	33,000				-2,400	-2,400	
시 비	33,000	30,600	33,000				-2,400	-2,4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당초 계획대비 사업인원 감소(108명→100명으로 8명 감소)로 잔액발생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의 입소 장애인들에게 기본적 생계비인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란치스코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생계급여 (장애인시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생계급여,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등 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랜치스프집 생계급여수급자 8명 * 250천원 * 12월	= 2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12.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01.~12. :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랜치스프집 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약 108명 - 304,055천원	
2019년	· 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랜치스프집 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약 105명 - 301,357천원	
2020년	· 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랜치스프집 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약 98명 - 273,333천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30,000	304,055		25,945	
2019년	330,000	301,357		28,643	
2020년	330,000	273,323		56,677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복지7급 배정민	전화	2216
-----	--------	-------------	-----	----------	----	------

#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7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38,000	123,600	153,600				- 30,000	-14,400	
국 비									
도 비	138,000	123,600	153,600				- 30,000	-14,400	
시 비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지급대상 인원 감소(256명→203명으로 53명 감소)로 변경내시(감액) 확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 종사자 변경에 따른 지급대상 인원 변동으로 예산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50명*12월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12.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20개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199명 처우개선비 지급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20개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월 약200명 처우개선비 지급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월 약203명 처우개선비 지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27,200	116,500		49,300	
2019년	138,000	88,700		49,300	
2020년	153,600	111,700		41,9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복지7급 김혜란	전화	2218
-----	--------	-------------	-----	----------	----	------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여성가족과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P - 75)

## □ 지방보조사업 개요(사업비)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0. 9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대표자 : 신선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들의 화합 및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영유아 사회성 발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29,410	0	29,410				-29,410	-29,410	
시 비	17,000	0	17,000				-17,000	-17,000	
자부담	12,410	0	12,410				-12,410	-12,410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집행으로 예산 삭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보육 조례	제29조 제13호
근거내용	제29조(보조금의 지급) 13.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보육교직원의 힐링음악회 추진으로 화합과 사기 양양 도모
- 어린이날 행사로 진행되는 체육대회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29,410	17,000	12,410		
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합 계	29,410	17,000	12,410	참여인원 500명
		(행사1) 보육교직원 힐링음악회	6,000	3,500	2,500	
		- 일 시 : 2020. 5. - 장 소 : 김포아트홀 - 지원단체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화합행사 - 산출근거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연연출 : 2,400,000원 ·음향 및 무대 : 1,100,000원 ·대관료 및 현수막 : 500,000원 ·기타비용(현수막, 체험재료비, 진행요원 석식 등) : 2,000,000원	2,400 1,100 500 2,000	2,400 1,100 0 0	0 0 500 2,000	
		(행사2) 어린이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 - 일 시 : 2020. 9. - 장 소 : 공설운동장 - 지원단체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사업내용 : 전통놀이, 민속공연 등 - 산출근거 ·공연연출 : 1,800,000원 ·음향 및 무대 : 5,700,000원 ·대관료 : 1,200,000원 ·민속놀이부스 : 6,000,000원 ·민속공연 : 1,500,000원 ·기타비용(진행요원 식대, 기타수용비 등) : 7,210,000원	23,410 1,800 5,700 1,200 6,000 1,500 7,210	13,500 1,800 4,200 0 6,000 1,500 0	9,910 0 1,500 1,200 0 0 7,210	참여인원 3,500명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추진실적 : 스승의 날 행사 힐링음악회 2018. 7. 보육교직원 1,000명 어린이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2018. 9. 영유아 3,000명, 민속공연, 전통놀이 등	
2019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추진실적 : 스승의 날 행사 힐링음악회 2019. 5. 보육교직원 500명 어린이 전통놀이 한마당 2019. 11. 영유아 3,500명, 민속공연, 전통놀이 등	
2020년	-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8년	22,200	15,000	7,200	22,200	15,000	7,200	-	-	-	
2019년	29,410	17,000	12,410	34,138	17,000	17,138	-	-	-	
2020년	29,410	17,000	12,410	0	0	0	29,410	17,000	12,41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소리나	전화	5905
-----	-------	------------	-----	----------	----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P - 7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2,15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142,280</b>	<b>1,873,480</b>	<b>2,163,480</b>				<b>-290,000</b>	<b>731,200</b>	
국 비									
도 비	571,140	936,740	1,081,740				-145,000	365,600	
시 비	571,140	936,740	1,081,740				-145,000	365,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 대상 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2,420명 → 2,152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누리과정 90,000원 × 268명 × 12월 ≒ -29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월 평균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1,850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	월 90,000원		
2019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월 평균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2,016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	월 90,000원		
2020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1,840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	월 90,000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062,880	997,235	-	65,645	
2019년	1,142,280	1,092,950	-	49,330	
2020년	2,163,480	903,980	-	1,259,5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 계	= -300,000
		- 정부지원	= 29,760
		· 누리과정 담당교사 110천원×2명×12월	= 2,640
		60천원×2명×12월	= 1,440
		· 치료사 400천원×4명×12월	= 19,200
		· 그 외 반담당교사 150천원×2명×12월	= 3,600
		120천원×2명×12월	= 2,880
		- 정부미지원	= 262,080
		· 누리과정 담당교사 110천원×2명×12월	= 2,640
		60천원×2명×12월	= 1,440
· 그 외 반담당교사 200천원×99명×12월	= 237,600		
170천원×10명×12월	= 20,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정부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월 평균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328	
	평가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224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78
			치료사	월 400천원/인 3
	평가미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20천원/인 18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5
			치료사	월 370천원/인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1,584	
	평가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200원/인 98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192
			치료사	월 450천원/인 -
평가미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170천원/인 37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40		
	치료사	월 420천원/인 -		

2019년	<p>·정부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원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합 계</td> <td colspan="2">404</td> </tr> <tr> <td rowspan="3">평가인증시설</td> <td>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td> <td>월 150천원/인</td> <td>252</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110천원/인</td> <td>91</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00천원/인</td> <td>3</td> </tr> <tr> <td rowspan="3">평가미인증시설</td> <td>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td> <td>월 120천원/인</td> <td>40</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60천원/인</td> <td>18</td> </tr> <tr> <td>치료사</td> <td>월 370천원/인</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404		평가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252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91	치료사	월 400천원/인	3	평가미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20천원/인	40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18	치료사	월 370천원/인	-	월 평균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404																												
평가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252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91																											
	치료사	월 400천원/인	3																											
평가미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20천원/인	40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18																											
	치료사	월 370천원/인	-																											
<p>·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원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합 계</td> <td colspan="2">1,552</td> </tr> <tr> <td rowspan="3">평가인증시설</td> <td>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td> <td>월 200원/인</td> <td>1,056</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110천원/인</td> <td>202</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50천원/인</td> <td>-</td> </tr> <tr> <td rowspan="3">평가미인증시설</td> <td>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td> <td>월 170천원/인</td> <td>254</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60천원/인</td> <td>40</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20천원/인</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1,552		평가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200원/인	1,056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02	치료사	월 450천원/인	-	평가미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170천원/인	254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40	치료사	월 420천원/인	-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1,552																												
평가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200원/인	1,056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02																											
	치료사	월 450천원/인	-																											
평가미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170천원/인	254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40																											
	치료사	월 420천원/인	-																											
2020년	<p>·정부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원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합 계</td> <td colspan="2">448</td> </tr> <tr> <td rowspan="3">평가인증시설</td> <td>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td> <td>월 150천원/인</td> <td>288</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110천원/인</td> <td>119</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00천원/인</td> <td>3</td> </tr> <tr> <td rowspan="3">평가미인증시설</td> <td>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td> <td>월 120천원/인</td> <td>31</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60천원/인</td> <td>7</td> </tr> <tr> <td>치료사</td> <td>월 370천원/인</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448		평가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288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119	치료사	월 400천원/인	3	평가미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20천원/인	3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7	치료사	월 370천원/인	-	11.30일까지 추진실적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448																												
평가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288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119																											
	치료사	월 400천원/인	3																											
평가미인증시설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월 120천원/인	3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7																											
	치료사	월 370천원/인	-																											
<p>·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원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합 계</td> <td colspan="2">1,556</td> </tr> <tr> <td rowspan="3">평가인증시설</td> <td>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td> <td>월 200원/인</td> <td>1,071</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110천원/인</td> <td>223</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50천원/인</td> <td>-</td> </tr> <tr> <td rowspan="3">평가미인증시설</td> <td>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td> <td>월 170천원/인</td> <td>222</td> </tr> <tr> <td>누리과정 담당교사</td> <td>월 60천원/인</td> <td>40</td> </tr> <tr> <td>치료사</td> <td>월 420천원/인</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1,556		평가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200원/인	1,07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23	치료사	월 450천원/인	-	평가미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170천원/인	222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40	치료사	월 420천원/인	-		
구 분		지원인원																												
합 계		1,556																												
평가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200원/인	1,071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23																											
	치료사	월 450천원/인	-																											
평가미인증시설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170천원/인	222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0천원/인	40																											
	치료사	월 420천원/인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170,300	3,949,310	-	220,990	
2019년	4,346,160	4,078,860	-	267,300	
2020년	4,945,920	3,300,860	-	1,645,06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구분	원장	담임교사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액	보수월액 80%	영아반 (만0~2세) 보수월액 80%	유아반 (만3~5세)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100%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 1,510,000원 × 24명 × 12개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월 평균
	지원인원	223	72	295	
2019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월 평균
	지원인원	297	70	367	
2020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11.30일까지 추진실적
	지원인원	323	68	391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614,020	5,487,526	-	126,494	
2019년	7,311,800	7,144,737	-	167,063	
2020년	8,060,807	6,815,486	-	1,245,321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P - 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7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전담,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863,800</b>	<b>3,232,822</b>	<b>2,959,800</b>	<b>51,600</b>		<b>8,210</b>	<b>213,212</b>	<b>369,022</b>	
국 비	1,431,900	1,616,411	1,479,900	25,800		4,105	106,606	184,511	
도 비	715,950	808,206	739,950	12,900		2,053	53,303	92,256	
시 비	715,950	808,205	739,950	12,900		2,052	53,303	92,25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일반 보육교직원 수당 신설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약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지원기준								
		구분	원장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취사부		
				영아반	유아반	정부지원	민간			수당형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80%	1,457 천원	457 천원	보수월액 100%	
		합 계							=	213,212
· 영아전담		: 7개소 × 약		1,060,000원 × 12월		=	89,040			
· 장애아통합		: 7개소 × 약		216,000원 × 12월		=	18,144			
· 장애아전문		: 1개소 × 약		2,700,000원 × 12월		=	32,400			
· 정부지원 시간연장교사		: 21명 × 약		148,300원 × 12월		=	37,371			
· 민간 시간연장교사		: 25명 × 약		102,800원 × 12월		=	30,840			
· 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10명 × 약		32,310원 × 12월		=	3,877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월 평균
	지원인원	128	48	18	5	57	
2019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27	49	19	8	51	
2020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32	48	18	10	56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633,384	2,569,295	-	64,089	
2019년	2,863,800	2,784,218	-	79,582	
2020년	3,019,610	2,579,232	-	440,378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소리나	전화	5905
				행정8급 우정훈		5589

# (보조교사 인건비) (P - 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58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4,197,656</b>	<b>6,861,848</b>	<b>6,091,708</b>	<b>364,320</b>		<b>469,078</b>	<b>-63,258</b>	<b>2,664,192</b>	
국 비	2,098,828	3,430,924	3,045,854	182,160		234,539	-31,629	1,332,096	
도 비	1,049,414	1,715,462	1,522,927	91,080		117,270	-15,815	666,048	
시 비	1,049,414	1,715,462	1,522,927	91,080		117,269	-15,814	666,04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보조교사 수 감소 따른 예산 감액(588명 → 583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합 계	≒ - 63,258
		· 인건비 : 1,002,000원 × 5명 × 12개월	= 60,120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4,000원 × 5명 × 12개월 (인건비×17.95%×30%)	= 3,24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이상 월 평균 270명, 832천원/인	
2019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이상 월 평균 320명, 973천원/인	
2020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이상 월 평균 340명, 1,056천원/인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월 평균 240명, 1,056천원/인	11.30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541,687	2,220,650	0	321,037	
2019년	4,197,656	3,600,891	0	596,765	
2020년	6,925,106	5,546,983	0	1,378,123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소리나	전화	5905
-----	-------	------------	-----	----------	----	------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P - 76~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02,960</b>	<b>93,400</b>	<b>86,400</b>				<b>7,000</b>	<b>-9,560</b>	
국 비									
도 비	20,592	18,680	17,280				1,400	-1,912	
시 비	82,368	74,720	69,120				5,600	-7,64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11개소 → 12개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으로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준</th> <th>40인 미만</th> <th>40인 이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월 지원액</td> <td>60만원</td> <td>90만원</td> <td>보육현원 기준</td> </tr> </tbody> </table>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고	월 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고						
월 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40인 미만 600,000원 × 1개소 × 12월	≒	7,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01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1개소(11개소 → 12개소)
- 2020.01~2020.12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월 평균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10개소×12월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2월	
2019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9개소×12월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2월	
2020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11.30일까지 추진실적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10개소×12월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2월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04,300	99,500	-	4,800	
2019년	102,960	89,400	-	13,560	
2020년	86,400	72,600	-	13,80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금액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지원기준 :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후 아동 제외)	
		· 30,000원 × 8명 × 12월	≒ 3,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01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1개소(11개소 → 12개소)
- 2020.01~2020.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월 평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30천원/명	12개소×12월	재원아동(현원) 기준	
2019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월 평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30천원/명	11개소×12월	재원아동(현원) 기준	
2020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11.30일까지 추진실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30천원/명	12개소×12월	재원아동(현원) 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17,830	112,310	-	5,520	
2019년	114,480	102,240	-	12,240	
2020년	101,520	82,290	-	19,23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P - 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353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31,792</b>	<b>178,667</b>	<b>205,335</b>				<b>-26,668</b>	<b>-53,125</b>	
국 비									
도 비	69,538	53,600	61,600				-8,000	-15,938	
시 비	162,254	125,067	143,735				-18,668	-37,18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1,556대 → 1,353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로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보육실 당 1대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 지원	
		- 렌탈 : 1대당 11,000원 지원	
		- 유지관리 : 1대당 최대 연 130,000원 지원	
		합 계	≙ -26,668
		· 렌탈비 11,000원 × 200대 × 12월	= 26,400
		· 유지관리비 130,000원 × 3대	= 39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월 평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73개소	1,227대			
2019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92개소	1,472대			
2020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11.30일까지 추진실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49개소	1,341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66,904	139,915	-	126,989	
2019년	231,792	154,960	-	76,832	
2020년	205,335	83,613	-	121,722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P - 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42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493,200</b>	<b>668,640</b>	<b>603,840</b>				<b>64,800</b>	<b>175,440</b>	
국 비									
도 비	98,640	133,728	120,768				12,960	35,088	
시 비	394,560	534,912	483,072				51,840	140,35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379개소 → 422개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1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협동 어린이집 : 월 150,000원/개소</li> <li>- 그 외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 월 100,000원/개소</li> </ul> </li> </ul>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64,800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가정·협동 어린이집 : 150,000원*22개소*12개월 =	39,600
		· 그 외 어린이집 : 100,000원*21개소*12개월 =	25,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월 평균
	총 계		293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98	
	가정 어린이집	월 15만원/개소	195	
2019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11.30일까지 추진실적
	총 계		339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113	
	가정·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개소	226	
2020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11.30일까지 추진실적
	총 계		351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128	
	가정·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개소	223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16,480	486,200	-	30,280	
2019년	493,200	492,450	-	750	
2020년	603,840	544,800	-	59,04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P - 77~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33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8,000</b>	<b>36,300</b>	<b>30,800</b>				<b>5,500</b>	<b>18,300</b>	
국 비	9,000	18,150	15,400				2,750	9,150	
도 비	4,500	9,075	7,700				1,375	4,575	
시 비	4,500	9,075	7,700				1,375	4,57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교사 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280명 → 33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직무교육비 80,000원/인, 승급교육비 140,000원/인	
		합 계	5,500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승급교육 140,000원 × 25명 × 1회 = 3,500 · 직무교육 80,000원 × 25명 × 1회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보수교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361	
	직무교육비	60천원/인	34	
	승급교육비	120천원/인	327	
2019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188	
	직무교육비	60천원/인	56	
	승급교육비	120천원/인	132	
2020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12월 집행예정)
	총 계		4	
	직무교육비	80천원/인	-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4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8,000	17,964	-	36	
2019년	18,000	18,000	-	0	
2020년	30,800	444	-	30,356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156천원	100천원
36 ~ 47		129천원	
48 ~ 83		100천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아동 ○ 지원종류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합 계	= 1,023,902
		가정양육수당 지원 · 100,000원 × 381명 × 12개월 · 150,000원 × 256명 × 12개월 · 200,000원 × 44명 × 12개월	= 457,200 = 460,800 = 105,6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18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104,849명	24명	298명	105,171명	
2019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98,059명	33명	368명	98,460명	
2020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81,144명	60명	252명	81,456명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6,221,000	16,169,692	-	51,308	
2019년	16,000,000	15,835,492	-	164,508	
2020년	14,917,588	12,798,737	-	2,118,851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P - 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8,1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60,238,212</b>	<b>62,416,450</b>	<b>58,496,987</b>				<b>3,919,463</b>	<b>2,178,238</b>	
국 비	39,154,838	40,570,692	38,023,041				2,547,651	1,415,854	
도 비	10,541,687	10,922,879	10,236,973				685,906	381,192	
시 비	10,541,687	10,922,879	10,236,973				685,906	381,19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보육료 지원 아동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7,700명 → 8,181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
근거내용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위한 보육료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지원내용 (단위 :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기본보육시간) 보육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부모보육료</th> <th>기관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470,000</td> <td>500,000</td> <td></td> </tr> <tr> <td>1세반</td> <td>414,000</td> <td>272,000</td> <td></td> </tr> <tr> <td>2세반</td> <td>343,000</td> <td>184,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70,000	500,000		1세반	414,000	272,000		2세반	343,000	184,000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70,000	500,000																	
		1세반	414,000	272,000																	
2세반	343,000	184,000																			
※ 2020년 영유아보육료 기준																					
합 계			≙ 3,919,463																		
· 만0세 : 970,000원 × 100명 × 12월			= 1,164,000																		
· 만1세 : 686,000원 × 180명 × 12월			= 1,481,760																		
· 만2세 : 527,000원 × 201명 × 12월			= 1,271,12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월평균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41천원	388천원	321천원	11,602명/월	437천원	238천원	161천원	7,648명/월	
	맞춤	344천원	302천원	250천원						
2019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월평균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54천원	400천원	331천원	11,669명/월	485천원	264천원	179천원	7,805명/월	
	맞춤	354천원	311천원	258천원						
2020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11.30일까지 추진실적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9,262명/월	500천원	272천원	184천원	7,140명/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6,092,200	56,092,200	-	-	
2019년	60,238,212	60,237,356	-	856	
2020년	58,496,987	51,103,750	-	7,393,237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P - 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71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교사의 이직률 감소를 통해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394,800</b>	<b>409,800</b>	<b>394,800</b>				<b>15,000</b>	<b>15,000</b>	
국 비									
도 비									
시 비	394,800	409,800	394,800				15,000	1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교사 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690명 → 711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보육조례	제29조 10호
근거내용	제29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변동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 최소화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합 계	15,000
		· 2~4년 미만 : 40,000원×4명×12개월	= 1,920
		· 4~5년 미만 : 50,000원×5명×12개월	= 3,000
		· 5년 이상 : 70,000원×12명×12개월	= 10,0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장기근속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5,307명	
	만 2년 이상 ~ 만 5년 미만	30천원/월	4,086명	
	만 5년 이상	60천원/월	1,221명	
2019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7,478명	
	만 2년 이상 ~ 만 4년 미만	40천원/월	4,525명	
	만 4년 이상 ~ 만 5년 미만	50천원/월	803명	
2020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총 계		6,078명	
	만 2년 이상 ~ 만 4년 미만	40천원/월	3,682명	
	만 4년 이상 ~ 만 5년 미만	50천원/월	619명	
	만 5년 이상	70천원/월	1,777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06,000	269,760	-	36,240	
2019년	394,800	372,070	-	22,730	
2020년	394,800	335,180	-	59,62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P - 78~7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8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4,084,600	4,851,938	4,299,686	393,086		66,556	92,610	767,338	
국 비	2,042,300	2,425,969	2,149,843	196,543		33,278	46,305	383,669	
도 비	1,021,150	1,212,985	1,074,922	98,271		16,639	23,153	191,835	
시 비	1,021,150	1,212,984	1,074,921	98,272		16,639	23,152	191,83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보육교사 수 증가(1,780명 → 1,813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 계	≒ 92,610
		· 담임교사 : 240,000원 × 31명 × 12개월	= 89,280
		· 연장전담 : 120,000원 × 2명 × 10개월	= 2,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담임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담임교사	월 220,000원	1,564명	
2019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담임교사	월 220,000원	1,540명	
2020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11.30일까지 추진실적
	담임교사	월 240,000원	1520명	
	연장전담교사	월 120,000원	240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047,000	4,002,790	-	44,210	
2019년	4,084,600	4,084,600	-	0	
2020년	4,759,328	3,793,760	-	965,568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소리나	전화	5905
-----	-------	------------	-----	----------	----	------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P - 7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33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사 겸직 원장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58,800</b>	<b>281,735</b>	<b>258,800</b>	<b>-7,065</b>			<b>30,000</b>	<b>22,935</b>	
국 비	129,400	140,868	129,400	-3,532			15,000	11,468	
도 비	64,700	70,434	64,700	-1,766			7,500	5,734	
시 비	64,700	70,433	64,700	-1,767			7,500	5,73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교사 겸직 원장 수 증가(306명 → 339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교사겸직원장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75,000원 × 33명 × 12개월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90명	
2019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90명	
2020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11.31일까지 추진실적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7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46,931	246,712	-	219	
2019년	258,800	258,800	-	0	
2020년	251,735	202,263	-	49,472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소리나	전화	5905
-----	-------	------------	-----	----------	----	------

# (아이돌봄지원) (P - 7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500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의 복지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 +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2,012,755</b>	<b>2,410,354</b>	<b>2,251,354</b>				<b>159,000</b>	<b>397,599</b>	
국 비	1,408,929	1,687,248	1,575,948				111,300	278,319	
도 비	301,913	361,553	337,703				23,850	59,640	
시 비	301,913	361,553	337,703				23,850	59,6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현
- 아이돌보미 채용을 통하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아이돌봄지원		합 계	159,000
	307-05 민간위탁금	· 아이돌봄지원 운영비(방역물품 구입비, 활동수당 등) =	209,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아이돌봄지원(정부지원금)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12 :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434가구 수요)	
2019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14가구 수요)	
2020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25가구 수요)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005,851	1,005,851	-	-	
2019년	2,012,755	1,806,207	-	206,548	
2020년	2,251,354	2,095,406	-	155,948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이인옥	담당자	행정8급 나승희	전화	5608
-----	-------	-------------	-----	----------	----	------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체육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솔터구장 정비 =	0
솔터구장 정비	401-01 시설비	▶ 축구장 정비 =	-10,000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 준공식 행사관련 비용 - 무대장치 및 음향 = - 준공식 홍보 및 행사진행 =	10,000 5,000 5,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 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b>계</b>	<b>14,600,000</b>	<b>9,000,000</b>	<b>3,850,000</b>	<b>0</b>	<b>2,300,000</b>	<b>0</b>	<b>1,550,000</b>	<b>0</b>	<b>1,750,000</b>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0	0	0	0	0	
	보상비	0	0	0	0	0	0	0	0	
	공사비	13,840,000	8,450,000	3,790,000	0	2,250,000	0	1,550,000	-10,000	1,600,000
	감리비	550,000	350,000	50,000	0	50,000	0	0	0	150,000
	부대비	10,000	0	10,000	0	0	0	0	10,000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2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8.06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 2018.09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이행
- 2018.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09 : 공사 착공
- 2020.06 : 공유재산(변경)심의 이행
- 2020.10 : 지방재정투자(변경)심사(자체) 이행
- 2020.11 :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반영
- 2021.06 : 공사 준공(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김포시
2019년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이행 - 2019. 06. 공사 착수	김포시
2020년	- 공유재산(변)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3,700,000	185,996	3,514,004	-	
2019년	8,814,004	3,897,044	4,916,960	-	
2020년	8,766,960	3,771,740	-	4,995,220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

**현장사진**  
**(칼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박종진	전화	258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0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 체육관 건립 = -25,000	
	201-01 사무관리비	· 건축설계 심의 및 인증 수수료 지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 25,000 - 녹색건축 예비 인증 = 5,000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 1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8,200,000	5,000,000	2,200,000	0	0	0	2,200,000	0	11,000,000	
공정별	설계비	700,000	700,000	0	0	0	0	0	0	0
	보상비	4,000,000	4,000,000	0	0	0	0	0	0	0
	공사비	12,775,000	300,000	2,175,000		0	0	2,200,000	-25,000	10,300,000
	감리비	700,000	0	0		0	0	0	0	700,000
	사무관리비	25,000	0	25,000		0	0	0	25,000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07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 2019.08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이행
- 2019.09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020.0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0.07 : 건축설계공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11 :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반영
- 2021.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05 : 공사 착공(예정)
- 2022.12 : 공사 준공(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김포시
2019년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김포시 경기도
2020년	- 건축설계공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	-	-	-	
2019년	5,000,000	4,082,000	918,000	-	
2020년	3,118,000	523,825	-	2,594,175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박종진	전화	258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 1,000,000	
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201-01 사무관리비	· 신문공고료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신문 게재 공고료 = 15,000	
	401-01 시설비	· 다목적구장 건립 (A=1,000㎡) = 940,000	게이트볼장 풋살장
		· 실시설계 용역 = 25,000	
	401-02 감리비	· 건축 감리비 = 2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1,000,000	0	1,000,000	0	0	0	0	1,0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25,000	0	25,000	0	0	0	0	25,000	0	
	보상비	0	0	0	0	0	0	0	0	0	
	공사비	940,000	0	940,000		0	0	0	940,000	0	
	감리비	20,000	0	20,000		0	0	0	20,000	0	
	사무관리비	15,000	0	15,000		0	0	0	15,000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6. :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체육관건립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
- 2020. 05. : 사업대상지 협의
- 2020. 06. : 경기도 사업변경 신청
- 2020. 08. : 경기도 사업변경 승인
- 2020. 09.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 2021. 01.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03. : 착공(예정)
- 2021. 06. : 준공(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9년	-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체육관건립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2020년	- 경기도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	11.30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	-	-	-	
2019년	-	-	-	-	
2020년	해	당	없	음	11.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박종진	전화	2585
-----	-----	------------	-----	----------	----	------